
「국내 주요 화석산지 표본 연구」 제안요청서

2026. 7.



국가유산청

「국내 주요 화석산지 표본 연구」 제안요청서

1 과업개요

- 용역명 : 국내 주요 화석산지 표본 연구
- 용역기간 : `26. 9월 ~ 12월(3개월/90일)
- 용역내용 : 국내 주요 화석산지 표본 연구 및 채취 (총21톤/6개체)
 - * 과업대상 : 웅진군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대이작도 최고령 암석, 제주 서귀포층 패류 화석
- 용역금액 : 207,710,000원(부가세 포함) (예산과목: 1300-1331-304-210-14)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내용

- 지질유산 표본 연구
 - 운반 대상 표본에 대한 지질학적 연구 진행
 - 표본 운반관련 채취 및 반출 등 현장작업 전반 관계전문가 직접수행
 - 표본 운반 및 연구 등 학술적 정밀 기록 및 보고서 작성·제출 등
- 지질유산 표본 현장 채취
 - 표본이 위치한 현장은 도서지역으로 장비 진입이 불가하고, 인력으로 작업이 가능한 곳으로 가설 및 작업대를 설치하여 천연기념물 및 중요 표본 훼손을 방지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함
 - 발주처에서 지정한 표본을 현장에서 헬기운반이 가능한 안전한 방식으로 채취함 (채취한 표본 1개당 무게는 3.5톤이하로 함)
 - * 표본 채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실시함
 - 채취된 표본을 선박 및 육상운반을 통해 최종 대전으로 운반함
 - * 운반과정 : 표본 채취(현장) → 헬기운반(선착장) → 정기선박운반(인천) → 육상운반(대전)
 - * 각 운반의 일정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함=

3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비영리법인 참여(중소기업 확인서 미보유 업체)가능

4 사업자 선정방식

가. 일반사항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에서 외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평가점수 산정 시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자리에서 반올림 함

나. 협상대상자 선정 및 평가

- 선정기준 :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함
- 평가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에 의거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하여 평가함
 - 기술(80%) + 가격(2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 【붙임 1】 제안서 평가표 참조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협상함
-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협상 우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다만,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업체와의 협상을 실시함

※ 기타 이곳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름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가. 제안서 작성

○ 기본방향

-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함

○ 유의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함
-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 규격은 A4 세로 방향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없음. 단, 우리 청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료는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이다(아니다)” 등과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

- 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이 경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 제출처 : 온라인 제출
- 제출일시 및 방법 : 입찰공고에 따름

다.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 및 서류에 대해서 심사하고,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의 효율성을 위해서 입찰참가업체에게 제안서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일자, 장소, 준비사항 등을 공지하며, 설명회에 불참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국가유산청예규 제40호(2025. 10. 2. 일부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실시

라. 기타 참고사항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 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 저작권재산권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

- 붙임 1. 제안서 평가표 1부.
2. 제안서(작성방법 및 양식) 1부.
3. 확약서 1부.
4. 청렴이행각서 1부.
5. 저작권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1부 끝.

【붙임 1】

제안서 평가표

□ 용역명 :

□ 업체명 :

□ 평가위원 :

(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가등급					점수
			㉠	㉡	㉢	㉣	㉤	
사업이해도 (20)	○ 용역 방향의 적절성	10	10	9	8	7	6	
	○ 용역 목적 및 필요성의 이해도	10	10	9	8	7	6	
	○ 연구 방법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도							
수행능력 (30)	○ 용역업무 추진체계 및 일정의 적정성	10	10	9	8	7	6	
	○ 과업수행 추진전략 및 기법의 우수성	10	10	9	8	7	6	
	○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의 적정성	10	10	9	8	7	6	
전문성 (20)	○ 제안내용의 전문성, 차별성, 혁신성	10	10	9	8	7	6	
	○ 세부활동 방안 및 과업관리의 타당성	10	10	9	8	7	6	
기대효과 (10)	○ 과업결과물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10	10	9	8	7	6	
기술능력 평가평수		80						

※ 평가요소별 점수 = 평가요소별 배점한도 × 등급별 환산율

※ 등급별 환산율

등 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환산율	100%	90%	80%	70%	60%

【붙임 2】

제 안 서

「

용역」

2026. . .

제안업체 : ○ ○ ○

제안 참여 신청서

용역명						
용역 책임자	소속기관		직위		전화번호	
	성명(한문)	()		전공	FAX	
	담당과목		세부전공			
용역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형태	문헌(), 조사(), 실험()		
	단독(), 공동()					
용역참여자	연구자(용역책임자 제외) 명			연구보조자	명	
본인은 불임 용역을 수행하고자 용역을 신청하며, 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청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기관장 : (인) 책임자 : (인)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요령 및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여 첨부된 서식에 따라 작성 (A4용지 크기, 한글로 작성) ○제출부수 : 정성적 제안서 1식(원본 1부)						
국가유산청장 귀하						

※ 제시된 제안서 작성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

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가능

요 약 문

1. 개 요

사 업 명						
연 구 책 임 자	소 속		부 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2. 주요제안내용

(신명조, 11pt)

3.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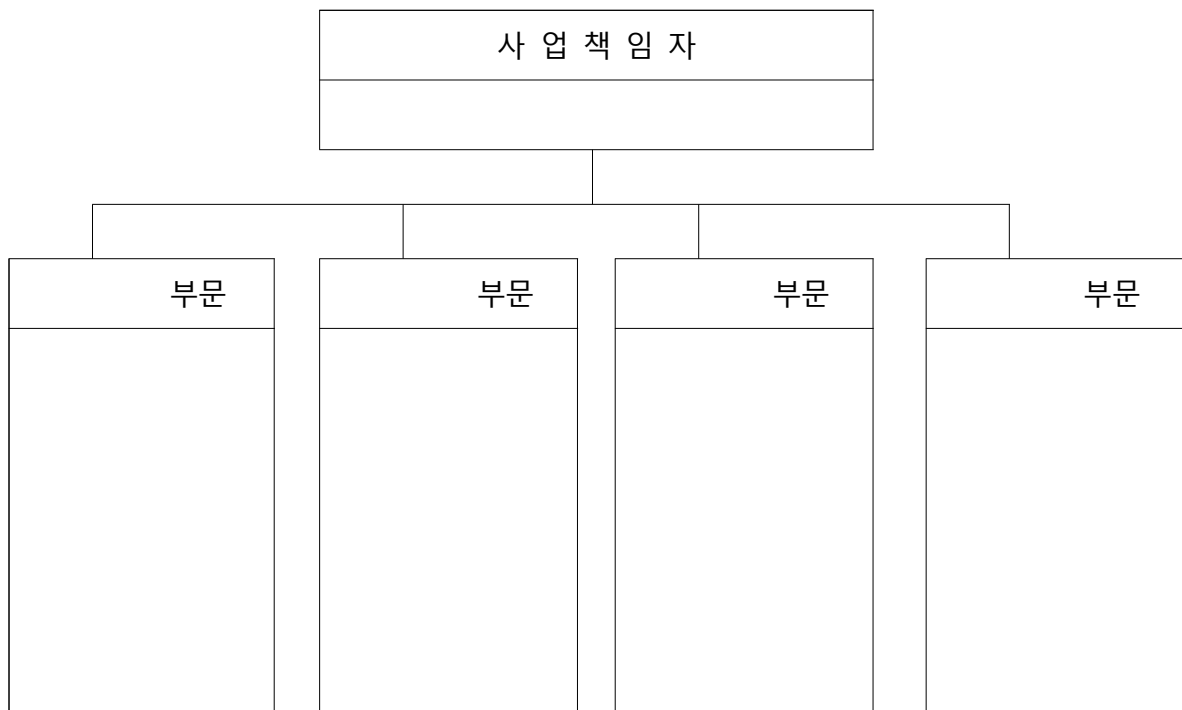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업 체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u>주요연혁</u> <u>조직 및 인원 현황</u>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업자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1. 참여자 총괄표

[illegible]

주 : 1. 참여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2. 구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으로 구분함.

3. 비고란에 총괄책임자는 ●, 분야별 과업책임자는 ○으로 표시할 것.

2. 과업참여자 인적사항

가. 총괄 책임자

(1) 인적사항

소 속	(신명조, 11pt)		직 위		
성 명	(한 글)		(한 자)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H.P)		
			자 택 :		
학 력	기 간	학 교 명(대학교 이상)		전 공	학 위
주 요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담당분야
자 격	취 득 일 자	자 격 명		등록번호	발행기관

(2) 연구논문 및 저서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 목	년도	발행지/출판사	기여도/등재구분

(3)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 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 역 명	용역기간 (사업금액)	발주처

※ 유사용역 인정범위의 용역으로 공고일 기준 완료된 것에 한함.

나. 연구원 등 과업참여자

(1) 기본사항

(용역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등 급	(신명조, 11pt)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연 락 처	전 화 ・ H.P :			
			E-mail :			
학 력	기 간	학 교 명(대학교 이상)		전 공	학 위	
주요 경력	기 간 (년)	기 관		직 위	담당분야	
실적	용역	용역명		연도	담당업무	발주처
자격	취 득 일 자	자 격 명		등록번호	발행기관	

(2) 연구원 연구실적

연구자	역 할 (연구자)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논문발표 학술지명	연구비 지원기간 (년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분담표

분 담 내 용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 필요시 과업수행 조직도 작성

4. 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용역과제와 관련되는 사항을 기술하고, 용역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내용 및 방법

가. 내 용

- 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나. 방 법

-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과업수행 계획이나 과업수행 합목적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6. 용역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가.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세부적으로 목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나.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7. 추진 일정표

용역기간 : 일

구 분	기 간	용역기간						비 고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8.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제안사항 등)

- ※ 당해 기관이 본 용역사업 수행시의 장점 등
- ※ 협력업체와의 주요 업무분담내역(공동이행에 한함) 및 필요성
- ※ 사실 확인 또는 증명을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확 약 서

1. 당 업체가 국가유산청이 발주하는 『 용역』 사업에 제안하는 내용은 기 예산(국고, 지방비, 자체예산)이 투입되어 진행(조사)한 적이 없음을 확약하며, 만약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본 업체는 계약금액(선금액포함) 전액을 반납할 것을 확약 합니다.
2. 국가유산청이 발주하는 『 용역』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소의 공정한 규격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국가유산청 계약관 귀하

【붙임 4】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가유산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가유산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유산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국가유산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기 관 명:

대표자명: (인)

국가유산청 계약관 귀하

【붙임 5】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 (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국가유산청(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단,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제목 : _____ 용역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년 ____월 ____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 원
		☐ 정기지급	(예: 월) _____ 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 %
	☐ 기타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년 ____월 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